#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2006-제20호

제출일자 : 2006. 4. 18 .

제출자:사천시장

### 1.의결주문

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#### 3.주요내용

-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2조·제3조)
  - 구성 : 위원장(부시장) 포함 15인이내
  - 임기 : 2년(연임 가능)
  - 기능
    - ·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시기 등에 관한 사항심의
    - ·특수공시 선정 사항 심의

# 4.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# 5.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06. 3. 8~ 3. 23) 결과 제출된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없음

#### 사천시 조례 제 호

#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

- 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천시지 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원회 구성)①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  -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③위원은 대학교수, 시민단체대표, 공무원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 -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제3조(위원회 운영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-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- 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, 시기 등에 관한 사항
    - 2.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  - ③ 위원회에서 정하는 특수공시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.
    - 1. 시업비 50억원 이상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특수시업 또는 숙원시업 추진실적
    - 2.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관심사항 추진실적
    - 3.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저소득층 생활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적
    - 4. 산업단지 조성, 기업유치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
    - 5. 기타 지역 현안사업으로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가 공시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사항

- 제4조(회의)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.
  -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 - 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제5조(의견의 청취)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6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 - ②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7조(수당 등)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사천시 위원회실 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8 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- 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조례 및 규칙의 폐지)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사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」 및 「사천시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# 관 런 법 령 발 췌

# 【지방재정법】

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- 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- 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- 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
- 4. 채권관리현황
- 5. 기금운용현황
- 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【지방재정법시행령】

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공통공시"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특수공시"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-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
- 2. 지방재정분석 · 진단의 결과
-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

-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 의위원회가 정한다.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- 제69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.
 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·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.
- 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공시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 야 한다.
  -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71조(재정운용상황의 보고)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2조(공시에 대한 조치 등)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
  -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,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.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4조 (예산의 이송·고시등)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 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,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5조 (결산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 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 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
 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·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  -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